※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5.>
■ 建設機械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8号書式] <改正2024年11月5日>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建設機械登録事項変更届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자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신고인 届出人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氏名 (法人の場合は商号及び代表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事業者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

건설기계명 建設機械の名称		건설기계 등록번호 建設機械登録番号		
변경 내용 変更内容	구분 区分	변경 전 変更前	변경 후 変更後	변경일자 変更日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建設機械管理法」第5条及び同法施行令第5条·第5条の2及び同法施行規則第7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届け出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
届出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殿

제출서류 提出書類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1. 所有者、占有者又は建設機械売買業者が登録事項を変更届を提出する場合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イ. 変更内容を証明する書類 나. 건설기계등록증 ロ. 建設機械登録証 다. 건설기계검사증 ハ. 建設機械検査証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売渡人が登録事項を変更届を提出する場合売渡の事実を証明する書類	수수료 手数料 1,000원 1,000ウォン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備考：登録事項の変更が建設機械の売買による場合、1. のイ. の変更内容を証明する書類又は2. の売渡の事実を証明する書類は次の目の通りです。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イ. 譲渡人と譲受人が直接取引を行った場合：別紙第8号の2書式の建設機械譲渡証明書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ロ. 建設機械売買業者が建設機械を売買、又は売買を斡旋した場合：別紙第8号の3書式の建設機械譲渡証明書	

처리 절차
処理の流れ

신고서 작성 届出書の作成	→	접수 受付	→	확인 確認	→	결재 決裁	→	등록사항 변경기재 登録事項 変更記載	→	등록증·검사증 교부 登録証・検査証 交付
신고인 届出人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特別市・広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特別市・広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特別市・広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特別市・広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特別市・広域市・特別自治市・道・特別自治道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